

교내 노동자 인권 카드 뉴스



인권앰베서더

교내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의 생활에 큰 편의를 제공하는 교내 노동자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인권, We Protect

인권앰버서더 1기는
연세대학교 교내 노동자들*에게 설문
(180명)과 인터뷰(40명)를 통해
노동 환경, 복리 후생, 건의사항 등 교내
노동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1. 노동 환경

1. 노동 환경

A. 온수 사용 금지



연세대학교 전 노동자 휴게실 및
청소용 수도에서 온수 배관을 잠갔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한겨울에도 항상 차가운 물로
생활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1. 노동 환경

A. 온수 사용 금지



그렇다면 온수 확보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온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노동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는
노동권 침해이자, 차별 대우를 하는
인권 침해입니다.

1. 노동 환경

B. 실외 근무자 저기능 마스크 사용



현재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 및 시설
관리 담당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는
KF80 제품입니다.

1. 노동 환경

B. 실외 근무자 저기능 마스크 사용

- 즉,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음. 따라서 노약자 및 임산부, 어린이,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겐 KF80이 권장됨.

출처 :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이는 한 번 호흡에 80%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을 갖춘, 주로 호흡이 어려운 노약자에게 권장되는 제품입니다.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적절치 않은 제품입니다.

1. 노동 환경

B. 실외 근무자 저기능 마스크 사용

유해물질 차단 성능 지수 'KF 등급'

KF80 평균 크기 $0.6\mu\text{m}$ 미세입자 80% 이상 차단

KF94,99 평균 $0.4\mu\text{m}$ 입자 94%, 99% 이상 차단

일반 약국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KF94 제품의
가격은 평균 약 1,000원입니다.

근로 도중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건강 상의 해악은
전적으로 고용자의 책임입니다.

1. 노동 환경

C. 휴식 공간 부재 및 휴게시설 열악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②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제 목	내 용
	제79조 (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갭내 등 작업장소의 여간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존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동법 제29조 제9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동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1. 노동 환경

C. 휴식 공간 부재 및 휴게시설 열악

그러나,

‘과학관’에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 없습니다.

‘음악관’에 근무하는 외곽근무자의 휴게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식 공간으로 내어줄 곳이 없다는 단과대학 측의
이유로 매우 열악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노동 환경

C. 휴식 공간 부재 및 휴게시설 열악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사업장 휴게시설설치·운영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악관을 비롯하여 현재
연세대학교 노동자의 휴게 시설은
이에 못 미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1. 노동 환경

D. 경비 노동자 휴식 시간 침해

경비 노동자는 5시간의 휴식시간(24시간 근무자의 경우)을 모두 경비실에서 보내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식)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휴식시간은 자유로운 이동과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통제당한다면, 이 시간은 제50조(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지 법정 휴식시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복리후생

2. 복리후생

A. 연차휴가 사용 금지



교내 노동자(특히, 경비노동자) 중 휴가 시 대체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 복리후생

B. 교직원 채플 금지



연세대학교 교목실

일부 노동자들이 교직원 채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에 열리는 교직원 채플에 근로시간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못한다고 하지만,
다른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속 용역업체에 따른 노동자의 종교활동 참가에 대한
차별은 분명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복리후생

C. 와이파이 사용 금지



교내 노동자에게 학교 와이파이(Wi-Fi)에 접속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에게 허용되는 와이파이와 같은 학내 구성원인 교내 노동자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2. 복리후생

D. 불안한 고용 승계

용역업체의 교체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팽배합니다.

학교 당국에서 용역업체와 굳이 단기 계약을 맺으려는 이유를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올해 협상 시 용역업체 중 두 곳은 1년, 두 곳은 3개월

한편,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현재 많은 수의 흡연자가 담배꽂초를
길거리에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과 더불어 몇몇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 상 불쾌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불결하며 청소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기간 도서관에서 분리가 안된 쓰레기들이
넘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물을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분리하지 않으면
청소 노동자가 다시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조그만 주의는
교내 노동자들에게 큰 배려가 됩니다!

